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강제력 행사권 부여와 의료 소송시 국가의 원고 지원에 대한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년 7월 27일

청 원 인

성 명 : 김채은 외 16명

주 소 : 충북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충북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성명 : 김채은
건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강제력 행사권 부여와 의료 소송시 국가의 원고 지원
소개년월일	2012년 7월 27일
<p>소개의견</p> <p>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법인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이 대한의사협회가 1988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후 23년 만인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p> <p>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환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또한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과오 입증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된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 의료과오를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의료정보의 독점성 때문에 승소율이 60%대에 머물렀다.</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의료행위와 정보의 전문성과 접근성 때문에 현실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환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의사특혜법이며 환자들의 피해구제 실익과 실효성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p> <p>이에 양자 간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조정의 단계에서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하여 상대적 약자인 원고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을 시 피신청인의 조정 단계 참여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의료분쟁 조정에 비협조적인 의료진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려 이 입법청원을 상정한다.</p>	

소개의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법인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과오 입증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의료진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영어로 휘갈겨 쓴 의료용어 때문에 변안조차 힘들어 소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일반인이 의료과오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60%가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져야 할 입증책임을 피고인 의사측에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의 명문화를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설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 참여 자체에 반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정 단계를 거치기도 전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중재원의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신청된 사안에 한하여 중재원의 조정 단계에의 당사자 참여를 강제하여 국민들의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한다.

2. 주요골자

1.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 참여에 강제력을 부여한다.
2. 의료 소송에서 신청인의 입증 책임의 전환을 명문화 한다.

현행	개정문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u>제6조</u> 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반드시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 신청)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신설> 의료소송이 불가피 한 상황에 신청인의 여건이 소송을 감당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의료조정 절차에의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 <신설> 의료소송에서 신청인의 의료 과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환하여야 한다.

청원인 성명 : 김채은

청원인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청원인 전화번호 :